



제418회국회(정기회)
제3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전기이륜자동차 포함〉

■ 조인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1728호)

2024. 9.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전기이륜자동차 포함 등	3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조인철의원 등 17인
2. 제 안 일 : 2024. 7. 15.
3. 회 부 일 : 2024. 7. 1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배달 플랫폼 산업이 발달하면서 내연 이륜자동차로 인한 도심 생활소음과 대기오염이 심각해짐에 따라 전기이륜자동차로의 전환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전 세계적으로도 탄소중립 정책과 맞물려 전기이륜자동차 보급 촉진을 위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며, 최근 우리나라도 서울특별시, 울산광역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내연 이륜자동차를 전기이륜자동차로 교체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의 계획을 발표한 바 있음.

그런데 현행 법령에 따르면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전기이륜자동차가 제외되고 있어, 이와 같은 전기이륜자동차 이용 활성화 정책을 시행하는 데 한계가 있는 상황임.

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종류에 전기이륜자동차가 포함될 수 있도록 현행법의 ‘자동차’에 대한 정의 규정에 이륜자동차를 명시하여 전기이륜자동차 관련 지원 정책을 활성화하는 한편, 현재 전기자동차 충전기는 전기이륜자동차와는 호환이 되지 않으므로 충전구역에의 주

차허용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및 제11조의2제7항).

Ⅲ. 검토의견

1.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전기이륜자동차 포함 등(안 제2조제1호 등)

개정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정의 및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에 주차할 수 없는 자동차의 종류에 전기이륜자동차를 추가하려는 것임.

[표 1]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자동차”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또는 <u>건설기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u> 을 말한다.	1. ----- ----- <u>건설기계</u> 를-----.
가. 「자동차관리법」 <u>제2조제1호</u> 에 따른 자동차	가. ----- <u>제3조제1항</u> 에 따른 승용자동차·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 <u>이륜자동차(같은 법 제2조제1호 본문에 따른 피견인자동차는 제외한다)</u>
나.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u>건설기계</u>	나. ----- ----- <u>건설기계로서 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콘크리트펌프</u>
2. ~ 10. (생략)	2. ~ 10. (현행과 같음)
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 ① ~ ⑥ (생략)	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 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전기자동차 2. (생략) ⑧ ~ ⑫ (생략)	⑦ ----- ----- ----- -----. 1. 전기자동차(전기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2. (현행과 같음) ⑧ ~ ⑫ (현행과 같음)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최근 전기이륜자동차¹⁾는 이동 편의성 및 기동성으로 배달용 등으로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정의에는 전기이륜자동차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 로드맵 등에 따른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음.

개정안은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현행법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정의에 전기이륜자동차를 추가하여 세금 감면²⁾ 혜택 등 각종

1) 최근 5년 전기이륜자동차 연간 보급대수
: ('19) 11,993대 → ('20) 14,005대 → ('21) 18,128대 → ('22) 15,917대 → ('23) 8,765대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④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를 감면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개별소비세 감면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별소비세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개별소비세액 전액
2. 개별소비세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0만원

환경친화적 자동차 지원 정책의 수혜를 받을 수 있게 하려는 취지로서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한편, 안 제11조의2에서는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에 주차할 수 없는 자동차의 종류에 전기이륜자동차를 추가하고 있는데, 이는 안 제2조와 같이 환경친화적자동차에 전기이륜자동차를 추가할 경우 전기이륜자동차도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에 주차가 가능하게 되는 점³⁾을 고려한 것으로써

전기자동차용 충전기는 전기이륜자동차와 호환이 되지 아니하여 전기이륜자동차의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에 주차 허용은 불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⁴⁾을 고려해 볼 때, 필요한 입법 조치로 보임.

산업통상자원부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나, 다만 시행시기와 관련하여 전기이륜차의 에너지소비효율기준⁵⁾ 등 세부기준 마련을 위한 시

3)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등) ⑦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동차를 제1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전기자동차

2. 외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되는 전기에너지로 구동 가능한 하이브리드자동차

4)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전기이륜차는 220V로 충전하며 기존 완속·급속충전기를 통한 충전이 기술적으로 곤란하므로, 충전시설의 주차구역에 전기이륜차 주차를 금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5)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나.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2.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배출가스 허용기준이 적용되는 자동차

행규칙 등의 개정에 필요한 소요기간을 고려해 볼 때, 개정안의 시행
일을 공포한 날로부터 1년 이상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466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환경기준에 부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자동차를 말한다.

가. 에너지소비효율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저공해자동차의 기준에 적합할 것

다. 자동차의 성능 등 기술적 세부 사항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3. “전기자동차”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
한다.